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701
----------	------

김현기 의원 (국민의힘, 강남구3)

- ☐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김현기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서울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를 설립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식품의 유통과 가격안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☐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며, 현재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- ☐ 다만,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대한 서울

시의 관리,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과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이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사무로 각각 분장되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우려되는 바입니다.

- 이에 따라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공사 ‘사장이 예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’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관리·운영, 유통업무종사자 지원 및 지도감독,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·품질 관리 등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게 하는 주요 산하기관입니다.
- 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,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및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세 주체가 상호 면밀히 사무를 검토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